

<2021 시대에듀 위생사 한권으로 끝내기> 18판 1쇄(발행일 : 2021년 5월 3일)

개정 법령 추록

안녕하십니까, 시대고시기획입니다.

<2021 시대에듀 위생사 한권으로 끝내기> 18판 1쇄 도서 출간 이후 개정된 법령 및 변경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페이지	수정 전(수정할 내용)	수정 후
p.595 시행규칙 제50조	3.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질환	3.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(화농성) 질환
p610 법 제101조	<p>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3조(식품 등의 취급)·제40조(건강진단) 제1항 및 제3항, 제41조(식품위생교육)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</p> <p>1의3.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</p> <p>6. 제48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제9항을 위반한 자</p> <p>7. 제56조(교육)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(삭제)</p>	<p>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3조(식품 등의 취급)를 위반한 자</p> <p>1의3.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</p> <p>3. 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</p> <p>5의2. 제46조(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)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6. 제48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제9항을 위반한 자</p> <p>8. 제74조(시설 개수명령 등) 제1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</p>
	<p>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2.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(삭제)</p> <p>3.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(삭제)</p>	<p>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40조(건강진단)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</p> <p>4.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</p>

	<p>4.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</p> <p>5.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</p> <p>6.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</p> <p><신 설></p>	<p>5.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</p> <p>6.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</p> <p>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41조(식품위생교육)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</p> <p>2. 제42조(실적보고)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</p> <p>3.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</p> <p>4. 제56조(교육)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</p> <p>⑤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p>
<p>P.617 시행규칙 제8조</p>	<p>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.</p> <p>1. 약국(삭제)</p> <p>2. 사회복지시설(삭제)</p> <p>3. 산후조리원</p> <p>4. 목욕장업소, 이용업소, 미용업소</p>	<p>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.</p> <p>1. 산후조리원</p> <p>2. 목욕장업소, 이용업소, 미용업소</p>
<p>P.623 시행령 제20조</p>	<p>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(생략)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(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) 또는 의원 중에서 (생략)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(생략) 한다.</p>	<p>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(생략) 의원, 병원급 의료기관(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로 한정) 중에서 (생략)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(생략) 한다.</p>

P.631 시행령 제24조	5.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	5. 병원급 의료기관
p.706 34번 해설	•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질환	•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 (화농성질환)
p.718 66번 해설	<p>•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자 키지 아니한 자(삭제)</p> <p>•소바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(삭제)</p>	•제40조(건강진단)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
p.729 30번 해설	<p>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(~생략)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(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) 또는 의원 중에서 (~생략)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(~생략) 한다.</p>	<p>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(~생략) 의원, 병원급 의 료기관(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로 한정) 중에서 (~생략)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(~생략) 한다.</p> <p>※ 병원급 의료기관 :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 원, 종합병원</p>